

수원지방법원 2021. 10. 13 선고 2020가단563898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 고 기술보증기금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인터로 담당변호사 황환민

피 고 A

소송대리인 변호사 한병의

변 론 종 결 2021. 8. 25.

판 결 선 고 2021. 10. 13.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1. 소외 B와 피고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1/2 지분에 관하여 2019. 12. 23. 체결된 재산분할약정을 취소한다.
2. 피고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1/2 지분에 관하여 소외 B에게 수원지방법원 화성등기소 2019. 12. 23. 접수 제260833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구상금 채권

- 1) 원고는 2018. 11. 21. 주식회사 C(이하 'C'라 한다)와 사이에 C가 중소기업은행에 대하여 부담하게 될 대출원리금 채무에 관하여 보증금액을 238,000,000원, 보증기한을 2019. 11. 21.까지로 정하여 신용보증약정(이하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당시 C의 대표자인 B는 C의 원고에 대한 구상금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 2) C는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았으나, 2020.경 원금연체 등으로 인하여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서 정한 보증사고가 발생하였고, 중소기업은행의 이행청구에 따라 원고는 2020. 8. 24. C를 대위하여 중소기업은행에 241,715,609원(원금 238,000,000원 + 이자 3,715,609원)을 대위변제 하였다.

나. B의 부동산 처분 등

- 1) B와 피고는 1996. 10. 16.경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로서 슬하에 자녀 2명(1997년생, 2002년생)을 두고 있었는데, 2019. 12. 23.경 협의이혼신고를 마쳤다.
- 2) B와 피고는 2012. 3. 24.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하'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중 1/2 지분에 관한 각 소유권을 취득하여 이 사건 부동산 중 1/2 지분을 각 보유하고 있었는데, B는 2019. 12. 23. 피고와 아래와 같은 내용의 재산분할합의약정을 체결하였고, 같은 날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 중 1/2 지분에 관하여 2019. 12. 23.자 재산분할을 원인으로 하여 수원지방법원 화성등기소 2019. 12. 23. 접수 제260833호로 B지분전부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재산분할협의 약정서

1. 위 부동산에 대하여 B는 A에게 이혼 후 재산분할등기로 명의 이전을 하기로 한다.
2. 본 부동산의 사용은 자녀(D, E)를 위한 것으로 그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시 본 약정은 파기되는

것으로 한다.

3. 약정이 파기되는 행위를 하게 됨과 동시에 B는 본 부동산에 대한 재산청구권을 A에게 행사할 수 있다.

4. 명의이전, 대출금 승계에 따른 부대비용은 이전받는 측에서 모두 부담한다.

3) 한편,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2. 4. 4.자 근저당권설정계약 및 2012. 10. 29.자 추가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한 채권최고액 288,000,000원, 채무자 B, 근저당권자 주식회사 F(이하 'F은행'이라 한다)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져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0호증, 을 제1, 2, 3, 4, 1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B는 채무초과 상태에서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 중 1/2 지분을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을 원인으로 하여 피고에게 처분하였는바, B와 피고의 재산상태에 비추어 B가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 중 1/2 지분을 이전하여 준 것은 재산분할의 상당한 정도를 벗어나는 과대한 것이므로, B와 피고 사이의 이 사건 부동산 중 1/2 지분에 관한 재산분할약정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한다.

나. 피고의 주장

피고는 B와의 이혼하면서 재산분할, 위자료, 양육비 명목으로 이 사건 부동산 중 1/2 지분을 이전받은 것인바, 이는 이혼에 따른 정당한 재산분할로서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피고는 재산분할 당시 B가 부담하는 채무 등 B의 재산상태에 대해 전혀 아는바가 없어 사해의사도 없었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은 혼인중 쌍방의 협력으로 형성된 공동재산의 청산이라는 성격에 상대방에 대한 부양적 성격이 가미된 제도임에 비추어,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이혼을 하면서 배우자에게 재산분할로 일정한 재산을 양도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를 감소시키는 결과로 되어도, 그 재산분할이 민법 제839조의2 제2항의 규정 취지에 따른 상당한 정도를 벗어나는 과대한 것이라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할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고, 다만 상당한 정도를 벗어나는 초과부분에 대하여는 적법한 재산분할이라고 할 수 없기 때문에 이는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취소의 대상으로 될 수 있을 것이고, 위와 같이 상당한 정도를 벗어나는 과대한 재산분할이라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는 점에 관한 입증책임은 채권자에게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이 때 채무자의 재산분할이 상당한지 여부는 민법 제839조의2가 정한 재산분할의 일반원칙에 따라 판단하되, 이혼한 당사자 일방의 이익과 채권자의 이익을 비교·형량하여 그 재산분할이 분할자의 채권자와의 관계에서도 상당한 것인지를 함께 고려하여야 한다(대법원 2000. 7. 28. 선고 2000다14101 판결, 대법원 2006. 9. 14. 선고 2005다74900 판결 등 참조). 한편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에서는 혼인 중 형성한 재산의 청산적 요소와 이혼 후의 부양적 요소로서의 성질까지 포함하여 분할할 수 있다(대법원 2005. 1. 28. 선고 2004다58963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 1)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피고가 B와 2019. 12. 23. 협의이혼하였고, 그에 따른 재산분할의 일환으로 B가 소유하던 이 사건 부동산 중 1/2 지분이 피고에게 이전되었음을 알 수 있다.
- 2) 나아가 위와 같이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 명목으로 이 사건 부동산 중 1/2 지분이 피고에게 이전된 것이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위 법리에 비추어 앞서 본 사실관계, 앞서 든 각 증거들, 을 제7 내지 10호증, 제13 내지 1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의 주장 및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재산분할로서 이 사건 부동산 중 1/2 지분을 양도받은 것이 민법 제839조의2 제2항의 규정 취지에 따른 상당한 정도를 벗어나는 과도한 재산분할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이를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

① B와 피고는 약 23년간 혼인관계를 유지하였는데, 혼인기간 동안 피고가 가사와 자녀양육을 담당하고 아르바이트 등의 소득활동을 하며 부부공동재산의 취득 및 유지에 협력하였다고 보인다.

② B와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할 당시 F은행으로부터 약 240,000,000원을 대출받고 F은행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는데, 이후 F은행에 대출금 원금 약 146,500,000원 및 이자 약 37,000,000원이 상환되었다. 피고는, 위 대출금 원금 및 이자 상환금 중 약 119,000,000원을 아르바이트 등을 통해 얻은 수입으로 피고가 부담하였고 B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 중 1/2 지분을 이전받을 당시 F은행에 대한 대출금채무 원금(93,500,000원)도 피고가 승계하기로 약정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바, 이러한 피고의 주장이 허위라고 선불리 단정할 수 없고, 피고의 위 주장에 의하면, 피고가 B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 중 1/2 지분을 이전받으며 취득한 이익을 이 사건 부동산 중 1/2 지분 가액 상당 그 자체라고 보기는 어렵다.

③ 피고는 B와 이혼 당시 피고가 2002년생인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기로 정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B가 피고와 이혼한 이후 피고에게 미성년 자녀에 대한 양육비를 지급하였다고 인정할 자료는 없는바, 피고는 B와 이혼한 이후 2002년생인 미성년 자녀에 대한 양육비를 부담하며 자녀들과 함께 이 사건 부동산에서 거주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④ 피고는 B가 2002.경 시작한 사업을 빌미로 잦은 외박, 음주 등으로 가정을 등한시하여 갈등을 겪다가 이혼에 이르게 되었다고 주장하고 있는바, 이 사건 부동산 중 1/2 지분을 이전받은 것에 B의 유책행위에 의하여 이혼함으로써 인하여 입게 되는 피고의 정신적 손해(위자료) 부분까지 포함되어 있다고 볼 여지가 있다.

⑤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이 상당한 정도를 넘는 과대한 것인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는 B와 피고가 이혼 당시 각 보유하던 재산관계가 증명되고 B가 제3자에게 부담하는 채무가 공동재산의 형성유지에 수반하여 부담한 채무로서 청산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 등이 증명되어야 할 것인데, 이러한 재산관계 등에 대한 구체적인 입증이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장우석

별지목록

1. 1동의 건물의 표시

경기도 오산시 동[도로명주소] 경기도 오산시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경사지붕 15층 공동주택(아파트)

1층 588.780m²2층 589.660m²3층 559.660m²4층 559.660m²5층 559.660m²6층 559.660m²7층 559.660m²8층 559.660m²9층 559.660m²10층 559.660m²11층 559.660m²12층 559.660m²13층 559.660m²14층 425.450m²15층 425.450m²지2 108.170m²지1 108.170m²

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

제10층 호철근콘크리트구조 123.67m²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

토지의 표시 : 1. 경기도 오산시 대 46,230m²

대지권의 종류 : 1. 소유권

대지권의 비율 : 1. 46,230분의 86.66

